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관련 1655 |
|----------|------------|

제안년월일 : 2020년 9월 4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“이의신청”을 “이의제기”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“이에 대한 이의신청을”을 “이에 대해 이의제기를”로 수정함.(안 제10조제2항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제2항 중 “이에 대한 이의신청을”을 “이에 대해 이의제기를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수 정 안 |
|---|--|---|
| <p>제10조(과태료의 부과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p> | <p>제10조(과태료의 부과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_____ _____ <u>부과 징수하거나 이에</u> <u>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</u> _____ _____.</p> | <p>제10조(과태료의 부과 등)</p> <p>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_____ _____ <u>부과 징수하거나 이에</u> <u>대해 이의제기를 하려는</u> _____ _____.</p> |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부과·징수하는”을 “부과·징수하거나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는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10조(과태료의 부과 등) ① (생 략)</p> <p>②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 법」에 따른다.</p> | <p>제10조(과태료의 부과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부과·징수하거나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 는 -----.</p> |